

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약약서



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와 관련하여 DB생명보험(주)와 본인 ()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 및 약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본인()은 20 년 월 발생한 ()청구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신청하며()보험(증권번호 :)에서 선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, 향후 최종 산정 보험금이 선지급한 보험금 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 그 차액(선지급 보험금 금액 - 최종보험금)을 DB생명(주)으로 환급할 것을 약약 합니다.

2. 상기인은 위 1항의 내용에 착오 또는 본 건 사고의 관계자로부터 사기와 강박등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작성한 것으로 불이행 시 이로 인한 귀사의 소송등 조치에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 합니다.

20 년 월 일

피보험자와의 관계 :

성 명 :

주 민 번 호 :

주 소 :

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안내

□ 실손의료보험(실손의료비) 가입자 중 입원 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일정 대상자에 한해 중간 정산액 중 일부(예상 지급보험금 70%)를 선지급하는 서비스 입니다.

□ 대상자 범위

① 의료급여법상 1종/2종 수급권자

②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'에서 정한 중증질환자

③ 의료비 중간정산액(본인부담기준)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자

- ② 또는 ③의 경우, 의료법 제 3조 제2항 제 3호에 의한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 보험법 제 40조 제 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

※ 단 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손해조사 또는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

□ 제출 서류 :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약약서, 중간정산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